

- 서울특별시 서북병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-

협약서

서울특별시 서북병원(이하 “서북병원”)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(이하 “공익법센터”)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, 협력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)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노력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- ① 양 기관의 인적·물적·시스템 등 인프라의 상호교류 및 협력
- ② 무료법률 현장상담소 운영(찾아가는 공익법센터)
- ③ 그밖에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·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

제4조(정보의공유) 협약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제공·공유함으로써 이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) 협약기관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타 기관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,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기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7조(기타협의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2018년 3월 20일

**서울특별시서북병원****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****서 북 병 원 장****이 상 훈****박 찬 병****이상훈****박찬병**